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6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단,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및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등록사항이나 매매계약서 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생산 연도에 따른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또는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을 포함한다) 운영자가 소유한 노후 농기계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법 제9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된 제조번호로써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의 지원 단가가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지원 단가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원대상이 2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⑤ 지원대상은 소유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신청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모두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이하 “신청 노후 농기계” 라 한다)의 제6조에 따른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업소에서의 시운전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제조번호 유무

3. 신청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

4.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신청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지 여부

제6조(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업소(이하 “폐기 지원업소” 라 한다)로 지정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제1항에 따른 폐기 지원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접하거나 대구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활용하거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중형 이상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지원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폐기 지원업소는 신청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4.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관리 대장 등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를 입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에 대해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업기계인 경우

4. 신청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제조번호와 관리시스템상 제조번호가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이중 지원이 의심되거나 제조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6.1.27.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10.27.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법률)」(2025.11.11.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2023.6.20. 일부개정, 2024.6.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1. 타법개정·시행)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 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4. 일부개정·시행)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 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자동차 등의 종류 (제7조 관련 발취)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2025년 5월 7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농업용 지게차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5.7. 일부개정·시행)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 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노후 농기계 등에 대한 조기 폐기 지원(안 제4조~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 주관부서인 농업정책과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25년부터 국·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2025년, 750만 원(국 : 시 : 군 = 5 : 1.5 : 3.5)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었으며, 1대를 선정하여 700만 원을 지원하였음. 2026년에는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 본 조례안 입안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국·시비 보조가 중단되더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안정적으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은 현 수준으로 볼 때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또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함. (안 제4조~제5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영 동 (☎ 2055)